##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 1.제안이유

푸드뱅크마켓은 기부받은 음식과 생활용품을 배분하여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사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으며, 이에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과 민간위탁(재계약)을 검토하여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및 위탁현황

구 분	금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소 재 지	금천구 탑골로35	
시설규모	1층, 247.5㎡	
위탁기간	2017.11.1. ~ 2022.10.31.	
법인현황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직원현황	정직원 3명, 사회복무요원 5명, 장애인일자리 1명	
이용인원	22년 8월 현재 이용등록자 853명(차상위, 수급자, 긴급지원 등)	

#### 나. 위탁업무

- 금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 푸드뱅크마켓의 재산 및 기타 물품의 보존 및 유지 관리
- 기부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기부물품 후원처 발굴, 지속적 관리 등

### 다.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라. 재계약 위탁기가 : 2022. 11. 1. ~ 2027. 10.31.(5년)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산출내역
푸드뱅크마켓 인건비	151,304 (시비 50%, 구비50%)	- 인건비(정직원 3인)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가 <del>족수</del> 당, 정액급식비
푸드뱅크 운영비	6,352 (시비 50%, 구비50%)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 구입, 유류비 등
푸드마켓 운영비	30,000 (구비 100%)	-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품 구입, 유류비 등
전세권설정, 공증, 위원회 수당	2,190 (구비 100%)	- 전세권설정 및 공증비 - 수탁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가. 추진근거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추진 필요성
- 금천푸드뱅크마켓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푸드뱅크마켓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 사업의 연속성, 고용승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우선 검토

## 4. 관계법령

- 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18〉
-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18〉

###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7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 재계약 및 기간연장 시 적정여부 심의